영국의 형사절차에 있어서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 방법

- <경찰 및 형사증거법(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PACE)> 규정을 중심으로

Verwendung sowie Gewinnung von DNA-Informationen in England

- als Mittelpunkt von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이 정 념*

- 1. 들어가는 말
- 11. 영국에서의 유전자정보 획득 및 이용
- Ⅲ. 영국의 유전자정보 이용현황 및 관련 논의들
- IV. 맺음말 우리나라에서의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제언

Ⅰ. 들어가는 말

유전자정보는 인간의 내밀영역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정보개념이다. 형사절차에 있어서 유전자정보는 현재 발생된 사건의 해결을 위해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인체유래증거물로부터 획득된 유전자정보와 범죄혐의자 내지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관련자로부터 획득한 유전자정보를 비교함으로써 신속·정확하게 범죄인을 발견하는데 그 이용목적이 있다. 아울러 장래 발생 가능한 형사사건에서의 사전적 증거확보라는 측면에서도그 이용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등의 나라에서는 이미 발생된 범죄뿐만 아니라 장래의 발생가능성 있는 범죄에 이용할목적으로 형사절차 전반에 유전자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뿐만

^{*} 영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법학박사)

아니라 특정 유전자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 유전자정보 이용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통적인 이유는 유전자정보가 지니는 개인식 별력을 이용하여 보다 지능화·흉포화·전문화 되어 가는 범죄인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강력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이들 나라 간에는 유전자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과 함께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는 주체와 대상범죄, 저장된 유전자정보의 폐기시점 등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나라마다 발생되는 범죄의 행태 및 재범율, 유전자정보의 이용과 관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법률의 내용,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각국의 국민들의 법적 마인드 등이 서로 다른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영국에서는 1985년 레스터(Leicester)대학의 알렉 제프리즈(Alec Jeffreys) 박사에 의해 새로운 자연과학적 기법인 유전자감식이 전문과학학술지인 네이처 (Nature)지1)에 발표 된 이후로 범죄인의 적극적인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1991년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인체유래물을 분석하여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과학연구소(Forensic Science Service, FSS)를 설립하였고, 1995년 4월에는 세계 최초로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National DNA Database, NDNAD)를 구축하는 등 형사사건에서 유전자정보의 적극적인 이용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84년 제정된 영국의 〈경찰 및 형사증거법(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PACE)〉은 유전자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인체유래물(DNA-samples)을 수집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법률이다. 특히 동법은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는 달리 개인으로부터 채취가능한 인체유래물을 내밀영역(Intimate samples)과 비내밀영역(Non-Intimate samples)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채취 가능한 인체유래물의 종류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하에서는 영국의 경찰 및 형사증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전자정보 획득 및 이용에 관한 규정과 함께 유전자정보 테이터베이스의 운영현황 및 관련 논의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¹⁾ A. J. Jeffreys/V. Wilson/S. L. Thein, Hypervariable 'Minisatr'llite' Regions in Human DNA, Nature(314), 1985, pp.67–73.

Ⅱ. 영국에서의 유전자정보 획득 및 이용

1. 개인식별을 위한 유전자정보의 도입 과정

영국에서는 일찍이 일상적인 혈액형검사가 수행되었는데, 그 주된 이용영역은 민사절 차 특히 부성확인을 위한 것이었다.2) 영국에서의 일상적인 혈액형검사는 법원에서 형사 사건에 대한 범죄혐의자를 확인하는데 있어 가치를 지니는 증거방법으로서 허용되었지 만, 능동적인 개인식별을 위해 적절한 방법은 아니었다.3) 전체적으로 영국의 법의학자 들은 이미 간단한 혈액형검사가 매우 높은 증거가치를 지닌다고 여기던 독일과는 달리 혈액형감정과 관련하여 그다지 높은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4) 이후 1985년 영국의 제프리즈가 새로운 자연과학적 기법인 유전자감식을 발견함에 따라, 유 전자감식기법은 종래에 영국에서 수행되었던 혈액형검사보다 더 많이 허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범죄인의 적극적인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영국에서 유전자감식기법은 범죄수사학에서 일상적으로 가능한 실제적인 방법에 속할 뿐만 아니 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원의 증거방법으로서 모범적인 유전자검사의 절차로서 인정되 고 있다.5) 영국에서 법과학적 기술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경찰이 유전자정보를 통해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발생한 범죄를 해결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다는 많은 보고들로부터. 법원뿐만 아니라 경찰도 형사절차에서 유전자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받 게 되었다. 유전자감식을 위한 DNA 샘플 수집의 증가는 개인의 유전자정보가 데이터의 형태로 수집되고 컴퓨터에 저장되는 모습을 띠기 시작하여 경찰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6)

²⁾ Birgit Klumpe, Der "genetische Fingerabdruck" im Strafverfahren - Rechtsprobleme bei der Anwendung genetischer Analysen in Großbritannien und Deutschland, Freiburg, 1993, S.47.

³⁾ Colin Tapper, Cross on Evidence, London u.a., 1990, p.39; Birgit Klumpe, 앞의 책, S.47.

⁴⁾ Jürgen Henke, Stellungnahme zur Anhörung des Rechtsausschusses des Deutschen Bundestages am 12.10. 1988, S.165ff.

⁵⁾ Birgit Klumpe, 앞의 책, S.52.

⁶⁾ Jane Kaye, Police collection and access to DNA samples, Genomic, Society and Policy Vol.2 No.1, 2006, p.16.

2. 유전자정보 획득 및 이용 방법

가. 형사절차에서의 유전자정보 획득 및 이용 방법

영국에서는 범죄수사와 증거수집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경찰이 지니고 있다. 영국의 〈경찰 및 형사증거법(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PACE)〉에 따르면 유전자정보 획득을 위한 활동으로 범죄현장에 대한 수색활동에 의해 인체유래증거물을 발견하거나 범죄혐의자가 지니고 있는 인체유래증거물에 대한 압수행위로부터 유전자감식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취득할 수 있다. 아울러 피의자 내지 사건관련자의 내밀영역 또는 비내밀영역에서 인체유래감식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7)

(1) 범죄현장에서 인체유래증거물 취득 방법

경찰 및 형사증거법 S.54(3)은 범죄현장에서 범죄혐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압수하거나 그를 체포할 때 수반되는 수색행위에 대한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 경찰은 범죄혐의자가 범죄현장에서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자기 또는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야기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거나 증거를 방해하여 범죄혐의자의 도망을 원조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혐의자의 옷이나 개인적인 소유물을 수색할 수 있다. 이 때 경찰은 압수하기 위한 물건이 발생된 범죄행위와 관련된 증거라는 점에 대해합리적인 근거를 가져야만 한다.8) 범죄현장에서의 범죄혐의자에 대한 내밀영역 수색(Intimate Search)은 범죄혐의자가 그의 겉옷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벗어야 하고 신체가 공개된 상태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 및 형사증거법 S.54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조사관 신분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을 지닌 경찰관이 다음과 같은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에 합리적인 근거를 지니는 범위 내에서 내밀영역 수색이 가능하게 된다. 즉, ① 범죄혐의자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야기하는데 이용할 수 있고, 경찰에서의 위치 또는 법원에서의 구금 중에 이를 사용할 우려가 있으며,

^{7) 1984}년 제정된 경찰 및 형사증거법은 영국에서 DNA 샘플을 수집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법률이다. 경찰 및 형사증거법의 제정 이래로 경찰력 및 DNA 샘플과 유전자감식결과(Profiles)가 수집·보관될 수 있는 사람들의 등급(Class)을 확대시키는 새로운 법률들이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래의 경찰 및 형사증거법에 규정되었던 많은 중요한 부분이 수정되기에 이르렀다. 예로 2001년 이전에는 특정인이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 석방된 경우에는 그의 DNA 샘플은 폐기되고 유전자감식결과도 NDNAD로부터 삭제되었지만, 2001년 경찰 및 형사증거법 S.64가〈형사사법 및 경찰법(Criminal Justice and Police Act)〉에 의해 수정되면서 DNA 샘플이 폐기되더라도 해당 유전자감식결과는 NDNAD에 저장될 수 있게 되었다(Jane Kaye, 앞의 논문, p.17)

⁸⁾ PACE S.54(4)(b).

② 범죄혐의자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수출할 목적으로 등급A에 해당되는 마약을 소지하고 있고, 체포 전에 특정한 범죄의도를 가지고 이를 소지하였다고 믿은 경우에는 내밀영역 수색이 가능하다. 이러한 예외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오직 이러한 물건들을 제 거하기 위한 목적으로의 내밀영역 수색만이 가능하게 되고, ②에 해당되는 마약발견을 위한 수색인 경우에는 범죄혐의자(소지자)의 적절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때의 동의 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구두로 한 경우에는 즉시 서면을 작성하여야 한다.9) 경찰 및 형사증거법 S.54 또는 S.55에 따른 범죄혐의자에 대한 수색은 유전자분석과 관련된 두 가지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발견된다. 즉, 이러한 수색으로부터 범죄혐의자의 옷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과 같이 다른 사람의 신체흔적이나 인체유래증거물이 확보될 수 있 고, 또한 수색과정에서 피의자의 DNA가 함유된 인체유래감식물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 에 그것으로부터 유전자분석이 가능하게 된다.10)

(2) 인체유래감식물의 채취 대상 및 방법

(가) 내밀영역 샘플(Intimate Samples)의 채취

영국에서는 경찰 및 형사증거법 S.62에 따라 피의자의 내밀영역에서 유전자감식을 위한 샘플을 채취하는 행위는 가장 광범위하고 중대한 신체검사로 간주된다.11) 여기에 서 말하는 '내밀영역 샘플'은 치흔(Dental Impression), 혈액샘플, 정액이나 기타 다른 조직액·소변, 음모(Pubic Hair)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식기로부터 또는 입을 제외한 체공으로부터 배출된 분비물을 의미한다.12) 경찰 및 형사증거법 S.62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만 내밀영역 샘플 채취를 허용하고 있다. 조사관 신분 또는 그 이상 의 자격을 지닌 경찰관은 특정 샘플이나 흔적으로부터 경찰에 구금된 자가 입건가능범죄 (Recordable Offences)¹³⁾를 저질렀음을 확증하거나 반증하기 위한 자신의 믿음에 합리적

⁹⁾ PACE Codes of Practice-Code C Detention, Treatment and Questioning of persons by police officers (Annex A.2), p.171.

¹⁰⁾ Birgit Klumpe, 앞의 책, S.59.

¹¹⁾ Birgit Klumpe, 앞의 책, S.60.

¹²⁾ PACE S.65(1): Paragraph 6.1(a) PACE Codes of Practice-Code D Identification of persons by police officers. 경찰 및 형사증거법 시행규칙(PACE Codes of Practice)은 형사사건 기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 지하고 범죄인을 밝히기 위한 과정에서의 개인식별을 위해서 경찰에게 이용되는 중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 한 것이다. 이 중 경찰 및 형사증거법 시행규칙 Code D는 2008년 1월 31일 자정 이후에 수행된 개인식별절 차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된다.

¹³⁾ 경찰 및 형사증거법 S.27(4)에 따르면 입건가능범죄는 구급형(Sentence of Imprisonment)이 가능한 범 죄를 의미한다.

인 근거가 있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서면동의가 있다는 전제 하에 그에 대한 내밀영역 샘플을 채취할 수 있다. 14) 이 때, 조사관 신분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을 지닌 경찰관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로부터 경찰에 구금된 자에 대한 내밀영역 샘플 채취행위의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경찰 구금상태에 있는 개인에 대한 내밀영역 샘플을 채취할 때, 치혼은 등록된 치과의 사에 의해 채취되어야 하고, 소변샘플을 제외한 다른 내밀영역 샘플은 오직 등록된 개업의, 간호사 또는 진료보조원에 의해 채취되어야 한다. 내밀영역 샘플은 둘 또는 그보다더 많은 비내밀영역 샘플(Non-Intimate Samples)을 이미 채취하였지만 불충분한 경우라면 경찰 구금상태에 있지 않은 개인으로부터 채취할 수도 있다. 15) 내밀영역 샘플의경우, 당사자는 샘플채취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동의과정은 적절한 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해당 사건의 법정에서 증거로 이용될 수 있는 샘플에 대해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샘플 채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그러한 거절의 의사표시가 재판과정에서 설명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여야 한다. 16)

(나) 비내밀영역 샘플(Non-Intimate Samples)의 채취

경찰 및 형사증거법에 따르면 '비내밀영역 샘플'은 음모 이외의 모근을 포함하고 있는 모발샘플, 손톱이나 손톱 아래에서 발견된 샘플, 내밀영역 샘플로부터 획득되는 분비물을 제외한 다른 부분으로부터 획득된 분비물, 타액, 피부흔 등을 의미한다.17) 1984년에 제정된 경찰 및 형사증거법의 목적을 위해 DNA 샘플의 대부분은 비내밀영역 샘플로 간주되고 있다. 〈형사사법 및 공공질서법(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1994)〉에 따라 경찰 및 형사증거법이 수정되면서 구강 분비물도 비내밀영역 샘플로 재분류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구강 분비물은 이제 범죄혐의자(Suspect)가 정당하게 구금된 경우라면 그의 동의가 없더라도 채취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18) 이 때 '정당하게 구금된 상황'에는 ① 개인이 경찰 구금 하에 있거나 법원의 권한으로부터 경찰보호 하에 두도록 한 경우19) ② 개인이 특정범죄를 위해 출두될 것이라는 고지를 받은

¹⁴⁾ PACE S.62(1).

¹⁵⁾ PACE S.62(1A); Paragraph 6.2(b) PACE Codes of Practice Code D.

¹⁶⁾ Jane Kaye, 앞의 논문, p.18.

¹⁷⁾ PACE S.63; Paragraph 6.1(b) PACE Codes of Practice Code D.

¹⁸⁾ Jane Kaye, 앞의 논문, p.18.

¹⁹⁾ PACE S.63(3)(a).

경우20) ③ 개인이 입건가능범죄로 유죄판결 받은 경우21) ④ 개인이 내세우는 주장의 부적절성을 이유로 구금된 경우22) 등이 해당된다.

내밀영역 샘플의 채취와 마찬가지로, 조사관 신분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을 지닌 경찰관 은 특정 샘플이나 흔적으로부터 경찰에 구금된 자가 입건가능범죄를 저질렀음을 확증하 거나 반증하기 위한 자신의 믿음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범위 내에서 비내밀영역 샘플 채취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23)

샘플채취의 당사자는 해당 샘플이 채취되기 전, 채취된 샘플로부터 획득된 유전자정 보가 명시적인 조사활동(Speculative Search)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고지 받아야 한다. 즉 명시적인 조사활동이란 해당 유전자정보가 미제사건으로부터 획득된 유전자정 보와 일치되는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사활동들이 수행되었을 때 에는 지체 없이 전과정을 기록하여야 한다.24)

(다) 제3자에 대한 인체유래감식물 채취

범죄혐의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수색을 가능하게 하는 경찰의 권한은 경찰 및 형사증 거법 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증인과 피해자의 역할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그들의 협조행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범죄인에 대한 유전자정보 를 획득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체로부터 범죄인의 유류물질을 취득하기 위한 경우 또는 비교용 인체유래감식물을 채취하기 위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경찰 및 형사증거법에 따라 피해자를 포함한 제3자로부터 인체유래감식물을 채취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임의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는 인체유래감식 물 채취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내밀영역에 대한 수색이 강제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도 인정되지 않는다.25)

(라) 정보선별조사 (Intelligence Screening)

영국 경찰은 정보선별조사를 통해 보다 용이하게 유전자정보 획득을 위한 인체유래감

²⁰⁾ PACE S.63(3A)(a).

²¹⁾ PACE S.63(3B).

²²⁾ PACE S.63(C).

²³⁾ Jane Kaye, 앞의 논문, p.19.

²⁴⁾ Jane Kave, 앞의 논문, p.19.

²⁵⁾ Birgit Klumpe, 앞의 책, S.59.

식물을 채취할 수 있다. 정보선별조사란 범죄혐의가 없는 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DNA 샘플을 지원자들로부터 제공받아 범죄혐의자를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최근까지 282건의 정보선별조사가 시행되어 과학수사연구소(Forensic Science Service)에 80000개 이상의 샘플이 확보되어 유전자감식절차가 수행되었다.26) 여기에는 경찰이 중대범죄가 발생되었던 지역의 지원자들에게 요청한 샘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때의 DNA 샘플들은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용된다. 이러한 샘플들로부터 획득된 유전자정보는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지 않는다. 최근 영국에서 행해진 정보선별조사는 2006년 2월 발생된 샐리 바우만(Sally Bowman)의 살인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남 크로이던(South Croydon) 지역에서 4000통의 편지가 20대부터 40대 남성들에게 보내졌는데, 그들은 모두 그 지역에 살거나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모두 백인이거나 밝은색 피부(light skinned)를 지녔다고 한다.27) 경찰은 그들 모두에게 DNA 샘플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정보선별조사과정에서는 누군가가 자신의 DNA 샘플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경우 그가 범일일 수도 있다는 경찰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정보선별조사에 대한 당사자들의 동의는 상당히 무의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28)

나. 유전자정보 획득 목적의 유전자감식이 가능한 범죄유형

영국에서는 유전자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유전자감식절차를 행할 수 있는 범죄유형에 대해서 체포가능범죄(Arrestable Offences)와 입건가능범죄(Recordable Offences)로 나누고 있다. 특히 유전자감식이 전적으로 금지되는 입건불가능범죄(Non-Recordable Offences)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체포불가능범죄(Non-Arrestable Offences), 체포가능범죄(Arrestable Offences), 중대한 체포가능범죄(Serious Arrestable Offences)의 구별은 〈중대조직범죄 및 경찰법(Serious Organised Crime and Police Act 2005, SOCPA)〉이 통과되면서 폐지되었다.

경찰은 모든 범죄에 대한 체포권한을 지니는데, 막 범죄를 실행하려고 하는 자와 범죄 실행중인 자를 체포할 수 있다. 경찰이 특정인에 대해 특정사건을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

²⁶⁾ FSS Wedsite http://fss.humid.esymposium.com/Intelligence_led_sceens.doc(Jane Kaye, 앞의 논문, p.26 참조).

²⁷⁾ Jane Kaye, 앞의 논문, p.19: 영국 BBC News 홈페이지 자료 참조. (http://news.bbc.co.uk/ lhi/england/london/4743760.stm)

²⁸⁾ Jane Kaye, 앞의 논문, p.20.

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는 장소에서 체포할 수 있다. 중대 조직범죄 및 경찰법 S.110을 근거로 하여 경찰이 체포가 필요하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 거를 가지고 있는 장소에서 행해져야 한다. 〈경찰 및 형사증거법 시행규칙(PACE Codes of Practice)〉은 체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누군가가 즉시 입증할 수 없 는 진술을 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체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고, 목격자와 접촉하거나 그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체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29)

영국에서 구금선고(Custodial Sentence)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범죄는 기록될 수 있고, 2005년 국립경찰기록 (입건가능범죄)(수정)규정30)에 따라 별표에 지정되어 있 는 구금불가능범죄(Non-Imprisonable Offences)도 기록될 수 있다. 1997년 이전에 만들어진 규정에는 매춘을 목적으로 하는 배회(Loitering) 또는 권유(Soliciting)행위, 공공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부적절한 이용행위, 운송수단(Vehicles)의 불법개조 (Tampering)행위, 편지발송 등 괴로움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의도로 이루어진 행위, 공공장소에서 칼(Blade)이나 바늘(Point)과 같은 물건의 소지행위 등 5개의 구금불가능 범죄가 입건가능범죄에 포함되었다. 이후 1997년에는 42개 범죄가 목록에 추가되었고. 2000년에는 다른 5개 범죄가 추가되어 해당 조항이 통합되었다. 2003년 (수정)규정에는 택시 호객행위(Taxi Touting), 구걸과 지속적인 구걸(Begging and persistent Begging)행위가 목록에 추가되었다. 입건불가능범죄에는 구금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못한 모든 범죄가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쓰레기 무단배출(Littering), 공공질서위반(Minor Public Order Offences), 교통법규위반(Minor Traffic Offences) 등과 같은 경범죄 (Minor Offences)가 해당된다.31)

3. 유전자정보의 증거가치에 대한 판례의 해석

영국에서는 1985년 제프리즈가 세계 최초로 유전자감식기법을 발견한 이래로 전문가 증언에 의하여 해당 과학적 증거의 가치가 부정적으로 판단되지 아니하거나 과학적 증거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전문가 증언에 필적할 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다

²⁹⁾ PACE Codes of Practice-Code G Statutory power of arrest by police officers: Nuffield Council, The Forensic Use of Bioinformation: Ethical Issues, Nuffield Council on Bioethics, 2007, p.10.

^{30) \(\}text{National Police Records(Recordable Offences)(Amendment) Regulations 2005\(\text{(SI 2005/ 3106)}\).

³¹⁾ 그러나 2007년 3월 영국의 내무성(Home Affair)의 계획이 실행된다면, 모든 범죄가 입건가능범죄로 취급 되어 모든 범죄자는 유전자감식 대상자로 취급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Nuffield Council, 앞의 책, p.10 참조).

면, 전문가 증언을 증거로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32) 현재 영국에서는 유전자감식의 기초가 되는 원리 내지 기술에 대해 일반적 승인이 전제되어 있다. 기술의 적합성이라는 측면은 유전자감식결과 확인된 개인의 특정유전자형의 출현빈도에 대한 통계상의 확률산정방법과 관련되어 논의되고 있다.

영국의 법원에서 유전자증거의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는 두 가지 는 유전자감식결과의 일치율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적 측면과 유전자감식절차 의 적절성이라는 절차적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영국의 항소법원은 방법적 측면으로 부터 유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결에서, 과학적 증거의 일치율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전문가 증언을 근거로 하여 유전자감식을 담당한 기 관이 이용한 측정방법을 비판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할 것을 판시한 바 있 다. 33) 또한 제임스 한라티(James Hanratty) 사건34)에 대한 재심판결에서는 유전자 감식절차의 적절성이라는 절차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판단하고 있다. 제임스 한 라티 사건은 1961년 8월 스코틀랜드의 루톤(Luton)과 베드포드(Bedford) 사이에 있 는 도로 상에서 발생한 마이클 그렉스텐(Michael Gregsten)에 대한 살인과 그의 애인 발레리 스토리(Valerie Storie)에 대한 강간살인미수 사건의 범죄혐의자로 체포된 제임 스가 1962년 2월 17일 사형선고를 받고 이후 항소가 기각되어 4월 4일 사형집행이 완 료된 사건이다. 35년이 지난 1997년 1월 제임스 사건은 다시 조사되었지만 2002년 5 월 10일 재심법원은 유전자감식기법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전자정보는 검찰 측의 유력한 증거를 더욱 강화하게 만드는 것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제임스가 범죄인임을 재차 입증한다고 판결하였다. 이후 제임스의 가족이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그 청구도 기각되었 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유전자감식에 이용된 사건의 유류물이 적정한 방법에 따라 보관 되었는가의 여부와 유류물의 오염가능성에 대한 판단보다는 유전자감식기법을 우선적으 로 고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³²⁾ Alldridge, Recognising Novel Scientific Techniques: DNA as a Test Case, Criminal Law Review, 1992, 696.

³³⁾ Magrath, DNA Test Use Questioned, Independent, 1994, p.15.

³⁴⁾ http://www.ff.iij4u.or.jp/~yeelen/victims/hanratty/hanratty.htm 참조.

Ⅲ. 영국의 유전자정보 이용현황 및 관련 논의들

1. 유전자정보의 획득과 이용을 위한 논의과정

1991년 4월 영국에서는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인체유래물을 분석하여 범죄를 해결하 기 위한 목적으로 법과학연구소(Forensic Science Service, FSS)를 설립하였다. 1994년에는 〈형사사법 및 공공질서법(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이 입법화 되었고, 1995년 4월에는 세계 최초로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NDNAD)를 구 축하였다. FSS는 영국의 경찰서장연합회(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ACPO)의 의뢰를 받아 NDNAD의 전체적인 관리를 담당하였다. 2004년까지 270만 명 이상의 범죄인 유전자정보와 24만여 건의 미제사건에 대한 유전자정보를 NDNAD 에 저장하여 9만 4천여 건의 사건에서 범죄혐의자를 검색하고 지목해내는 성과를 거두 었다

영국의 NDNAD는 1994년 최초의 관련 입법인 형사사법 및 공공질서법이 제정될 때 부터 모든 입건가능범죄(recordable offence)를 입력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2001년 개정된 〈형사사법 및 경찰법(Criminal Justice and Police Act)〉에 따르면 특정인의 유전자정보가 NDNAD에 저장된 경우 당사자가 무죄확정 되었거나 불기소된 경우에도 해당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2003년 에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으로 개정되면서 단순 체포자 시점부터 해당 유전자정보의 입력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후 2006년에는 〈경찰 및 사법법(Police and Justice Act)〉으로 개정되어 NPIA(National Policing and Improvement Agency)가 신설되었다.35) 현재 NPIA는 경찰의 업무향상을 목적으로 경찰력을 원조하 기 위한 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36)

영국에서 2005년 말까지 NDNAD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전자정보는 3,100,000여

³⁵⁾ 영국의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련 법 규정은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점이 발견될 때마다 해당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법 규정이 정립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4년 〈형사사법 및 공공 질서법(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은 2001년 〈형사사법 및 경찰법(Criminal Justice and Police Act)〉으로 개정되었고, 2003년에는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으로, 2006년에는 〈경찰 및 사법법(Police and Justice Act)〉으로 개정되었다.

³⁶⁾ 영국 NPIA Website http://www.npia.police.uk/en/5151.htm 참조.

개에 달하였고, 여기에는 16세 이하의 청소년으로부터 획득한 585,000여 개의 유전자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2006년 말에는 4,000,000개 이상의 유전자정보를 저장하는 등 매달 30000여 개의 유전자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범죄현장으로부터 발견된 증거물을 비롯하여 범죄혐의자, 체포된 자 등 유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자들로부터 획득된 정보 또한 포함하고 있다. 영국의 NDNAD에는 개인의 전체 유전자염기서열이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STR 기법에 의해 획득된 정보만이 저장된다고 하지만, 개인의 DNA 샘플이 상당한 기간 동안 보관되고 있어 개인의 완벽한 유전정보를 포함하게 된다는 비판도 있다.37)

최근 영국에서는 무죄인 청소년들 40000여 명의 유전자정보를 NDNAD에 보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2년 남짓의 기간 동안 15,000여 명의 유전자정보가 NDNAD에 저장되었다고 한다. 또한 40000여 명 중 13%는 10-17세의 청소년들이라고 한다. 2008년 4월까지 영국의 경찰국립전산시스템 (Police National Computer)에는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유전자 감식자료 349,934 건이 보관되어 있다. 이 중 303,393명의 청소년들은 재범자들이며 이들의 87.1%인 264,297명은 유죄판결・훈계・장계 또는 마지막 경고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8년 7월 영국의 한 정부출연조사기관(Government-funded Inquiry)에서는 유죄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의 유전자정보를 NDNAD에서 삭제하여야 하고, 이러한 감시는 독립 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권고한 바 있다.38)

2. 형사절차상 유전자정보의 이용 현황

영국의 NDNAD는 잉글랜드와 웨일즈를 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법률체계가 다른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와도 교류하여 상호 입력·검색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NDNAD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유전자정보와 범죄현장 증거물로부터 획득한 유전 자정보가 주요 기반으로서 입력되어 있다. 동의를 전제로 하여 자신의 인체유래감식물을 제공한 자들에 대한 유전자감식은 영장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당 유전자정보는 NDNAD에 저장되지는 않는다. 이 외에 유전자감식업무 및 분석업무를 행하는 자들의

³⁷⁾ 영국 Wealthy Affiliate Bonus Website 참조.

⁽http://wealthyaffiliatebonus.com/blog/wealthy-affiliate-bonuses/uk-national-dna-database)

³⁸⁾ 영국 Timesonline 홈페이지 2008.8.16 기사 참조.

⁽http://www.timesonline.co.uk/tol/news/politics/article4543300.ece)

유전자정보는 보조적으로 입력되고 있다. 영국에서 유전자감식에 이용되는 유전자마커 는 SGM+로, 10종의 STR분석 시스템(TH01, vWA, D16S539, FGA, D8S1179, D21S11, D18S51, D3S1358, D19S433, D2S1338)을 이용하고 있다.

가.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UK NDNAD)

영국의 NDNAD는 세가지 주요기반 즉. 피의자 및 피고인 샘플(Criminal justice('CJ Arrestee') Samples), 배제 샘플(Elimination Samples), 범죄현장 샘 플(Samples)로서 채취된 인체유래감식물에 대해 유전자감식절차를 거침으로써 유전자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 피의자 및 피고인(CJ Arrestee)의 인체유래감식물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체포된 시점에서부터 수사관련 자료에 기록됨으로써 획득된다. 배제 샘플은 특정인이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부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또는 장래 경찰조사로부터 배제 되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동의절차를 거친 특정인들로부터 획득된다. 범죄현장에서 발견 된 DNA는 범죄현장 증거물이 된다. NDNAD에 저장된 대부분의 DNA는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람들로부터 발견된 것이다.39) 피의자 및 피고인 샘플. 배제 샘플은 일단 NDNAD에서 구별되지 않고, 모두 행위주체 샘플(Subject Samples)로 칭하게 된다. 추가적인 유전자감식결과(DNA profiles)는 신원미상자들에 의해 범죄현장에서 저장된 Trace Biological Material의 이론을 통해 보증된다. 모든 행위주체 샘플은 NDNAD 에 저장되고, 이들로부터 획득된 유전자정보는 제공자의 동의 없이 NDNAD에 영구적 으로 저장된다. 유전자정보는 개인의 전자적 전과기록(Electronic Criminal Justice Record)을 구성하게 되지만, 배제샘플을 제공한 당사자는 체포소환번호(Arrest Summons Number, ASN)로 기록되지 않는다.40)

NDNAD는 생물학적 샘플(Biological Samples)로부터 획득한 유전자정보를 전자적 전과기록(Electronic Records)에 포함한다. 생물학적 샘플은 NDNAD에 다음 정보가 전자적 전과기록으로써 저장되는 동안에는 폐기되지 않는다.41)

① 개인의 전과기록과 경찰인지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찰 국립 전산시스템(Police National Computer, PNC)에 저장되기 위해 링크되는 체포소환번호(Arrest

³⁹⁾ Nuffield Council, 앞의 책, pp.8-9.

⁴⁰⁾ Nuffield Council, 앞의 책, p.9.

⁴¹⁾ Nuffield Council, 앞의 책, p.12.

Summons Number, ASN)

- ② DNA 샘플을 수집한 경찰력(Police Force)에 대한 정보
- ③ 개인의 이름, 생일, 경찰에 의해 정의된 민족 특유의 외모, 성별
- ④ 혈액·정액·타액 등 DNA로부터 획득된 생물학적 샘플에 대한 유형적 세부사항
- ⑤ 이용된 유전자검사의 유형
- ⑥ 성별이 표기되고 두 자리 숫자로 입력되도록 하는 전체 20줄로 구성된 유전자감식 자료(DNA Profile)
- ⑦ 저장된 생물학적 샘플의 위치로 링크되는 특수 바코드 조회표

나.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UK NDNAD) 운영 성과

영국에서는 범죄수사과정에서 유전자감식절차가 행해진 사람들의 수 및 유전자감식을 위해 자신의 인체유래감식물을 제공한 사람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05년에 체포된 자들은 130만 명 이상에 이른다. 이들 중 34.6%가 자신의 인체유래감식물을 제공하였고 이들에 대한 유전자감식은 이미 완료되었다고 한다. 입건가능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유전자감식절차의 수행을 위해서 자신의 인체유래감식물을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체포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2007년 3월 영국의 내무성은 이러한 제한을 철폐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것은 범죄혐의나 경범죄(Minor Offences)로 체포된사람들에 대한 인체유래감식물 채취 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게 된다. 영국에서는 매년 남성인구의 25% 이상, 여성인구의 7% 이상이 일상생활 중에 체포된다고 한다. 이러한상황에서 경찰이 유전자정보 수집을 위해 개인의 인체유래감식물에 대한 확장된 채취 권한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NDNAD는 곧 전체 인구의 1/5 또는 그 이상의 유전자정보를 저장함으로써 거대하게 팽창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42)

⁴²⁾ Nuffield Council, 앞의 책, pp.9-10.

Ⅳ. 맺음말

- 우리나라에서의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제언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과학수사자문협의회에서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도입이 건의되어, 1994년에는 대검찰청에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설치추진위원회가 구성되 었고. 같은 해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각각 관련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유전자정보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을 위한 입법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2006년 8월 1일 정부는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제17대 국회의 회기만료를 이유로 동 법률안은 폐기되었다. 이후 법률안의 명칭 및 내용 등이 수정ㆍ보 완되면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되어 2009년 5 월 27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의해 입법예고 되었다. 정부는 "최근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사건의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 범죄수법도 연쇄범죄화, 흉포화, 지능화 경향을 띠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 이러한 강력범죄는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련성이 없이 가해자의 범행 습벽에 의해 치밀하고, 잔인하며, 지능적으로 범해 지면서 과거에 범행을 저질렀던 자가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디엔에이신원 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미리 확보하여 관리하면서 강력범죄가 다시 발생하였을 때 보관 중인 데이터와 현장에 남아 있는 디앤에이감식시료로부터 채취한 디앤에이신원확인정보를 비교하여 신속히 범인을 특정·검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라고 하면서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역설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동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범인검거율의 획기적 향상 및 추가 피해 발생 예방 가능. 높은 범죄억지력으로 탁월한 범죄예방 효과. 무고한 수사 대상자 등에 대한 보호를 통하여 국민 인권 보호에 기여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43)

^{4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2009.5.27 입법예고) 제안이유 참조. 법률안에서는 유전자감식을 통하여 알아낸 개인식별을 위한 유전자정보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로 정의하 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유전자정보'를 개인식별 목적으로 유전자감식에 의해 획득한 정보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와 유전자정보를 구별하여 쓸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유전자정보', 디엔에이감식을 '유전자감식', 디엔에이신원확인정 보데이터베이스를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를 '유전자정보담당자' 등으로 정 리하고자 한다.

유전자정보가 지니는 개인특유성과 함께 생명공학기술 및 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인간 유전자정보는 앞으로도 더 많은 쓰임새로 이용될 것임은 분명하다. 형사절차에 있어서 유전자정보는 발생범죄사건의 중요사실을 확정하고, 장래의 형사소추 가능성이 있는 범죄행위에 대한 사전적 증거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존재의의가 있다. 다만 유전자정보 획득 과정이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 내지 침해하는 속성을 지니기에, 개인의 기본권보호라는 측면과 형사사법의 효율성이라는 측면 모두가 긍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영국의 경찰 및 형사증거법에서 유전자정보를획득하기 위한 인체유래물을 내밀영역과 비내밀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은 유전자정보 획득을 위해 수반되는 불가피한 신체침해행위의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신체침해행위의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영국에서는 1994년 4월에 국가 차원의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NDNAD)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서 다시금 붉어진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논의를 위해서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

성폭력을 비롯한 강력사건의 현장에서 발견 · 수집된 생물학적 증거물은 유전자감식절 차를 거침으로써 획득되는 개인 특유의 유전자정보로부터 범죄인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범죄를 위해 이용되는 유전자정보라 하더라도 그것 과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무용한 증거로의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형 사절차상 유전자정보의 이용가치는 범죄혐의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이미 획득 되어 보관 중인 유전자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범죄행위 관련자를 검색해냄으로써 신속하 고 효율적으로 범죄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전자정 보의 증거로서의 가치가 발생범죄사건에서의 신속한 범죄인 발견 및 미제사건의 해결과 함께 장래 발생가능성이 있는 형사사건에 대한 사전적 증거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존재한 다고 할 때, 이러한 유전자정보의 가치는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존재를 통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인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논의는 더 이상 찬반 양립적인 논쟁이 아닌, 어떤 방향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유전자정 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 스의 구축목적은 장래의 형사절차를 위한 사전적 증거확보에 있다. 여기에서 '장래의 형 사절차를 위한 사전적 증거확보'는 장래의 범죄행위를 해명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이미 범해진 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해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는 것이다. 유전 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논의는 국가기관의 엄정한 업무수행으로부터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차원에서의 사회적 신뢰 획득을 요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유전자감식기법으로부터 획득한 유전자정보는 발생범죄사건에 대한 요증사실을 증명하 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지만 해당 정보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이용실익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 형사절차에서 유전자정보 이용 목적이 이미 발생한 범 죄의 해결뿐만 아니라 장래의 형사소추 가능성을 위한 예비조치로서의 성격도 지니는 것 이라고 할 때, 중대한 의미의 범죄행위 및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한 범죄행위에 대한 반 복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부정적 예측판단이 가능하다면 해당 범죄인의 유전자정보를 국 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 실익이 있다 할 것이다.

주제어(Key Words): 유전자정보(DNA-Information), 유전자감식(DNA-Analyse), 인체유래물(Körperzellen), 인체유래증거물(Spurenmaterial), 개인식별 (Täteridentifikation), 경찰 및 형사증거법(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PACE)

〈논문접수 : 2009.6.22, 심사개시 : 2009.6.25, 게재확정 : 2009.7.23〉

참고문헌

I. 단행본

1. 구미문헌

Birgit Klumpe, Der genetische Fingerabdruck" im Strafverfahren – Rechtsprobleme bei der Anwendung genetischer Analysen in Großbritannien und Deutschland, Freiburg, 1993

Colin Tapper, Cross on Evidence, London u.a., 1990

Magrath, DNA Test Use Questioned, Independent, 1994

Nuffield Council, The Forensic Use of Bioinformation; Ethical Issues, Nuffield Council on Bioethics, 2007

Ⅱ, 논문

1. 구미문헌

- A. J. Jeffreys/V. Wilson/S. L. Thein, Hypervariable 'Minisatrllite' Regions in Human DNA, Nature 314, 1985
- A. J. Jeffreys/V. Wilson/S. L. Thein, Individual spectific 'Fingerprints' of human DNA, Nature 316, 1985
- Alldridge, Recognising Novel Scientific Techniques: DNA as a Test Case, Criminal Law Review, 1992
- Jane Kaye, Police collection and access to DNA samples, Genomic, Society and Policy Vol.2 No.1, 2006
- Jürgen Henke, Stellungnahme zur Anhörung des Rechtsausschusses des Deutschen Bundestages am 12.10. 1988

Stephen Jones,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The Modern Law Review 48, 1985

Ⅱ. 기타

1. 국내문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2009.5.27 입법예고)

살인 · 강간 등 흉악범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과 관련하여, 법률제정 공청회 자료집, 2009.4.29

2. 구미문헌

http://www.npia.police.uk/en/5151.htm

http://fss.humid.esymposium.com/Intelligence_led_sceens.doc

http://news.bbc.co.uk/1hi/england/london/4743760.stm

http://en.wikipedia.org/wiki/Genetic_fingerprinting

http://www.forensic.gov.uk/forensic_t/inside/news/fact_sheets.htm

http://www.forensischinstituut.nl/NFI/nl.

http://www.timesonline.co.uk/tol/news/politics/article4543300.ece

http://wealthyaffiliatebonus.com/blog/wealthy-affiliate-bonuses/uk-natio nal-dna-database

http://www.ff.iij4u.or.jp/~yeelen/victims/hanratty/hanratty.htm

Verwendung sowie Gewinnung von DNA-Informationen in England
- als Mittelpunkt von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Lee, Jung Nyum (Dozentin, Youngdong Universität)

DNA-Fingerprinting gehört in England inzwischen zu den routinemäßig praktizierten Methoden in der Kriminalistik. Für die Ermittlung und die Beschaffung von Beweismitteln ist in England allein die Polizei zuständig. waren die Befugnisse der englischen Polizei zusammenhängend gesetzlich geregelt, sondern durch die sogenannten Judges' Rules umrissen. Diese richterrechtlichen Regeln legten einige Befugnisse der Polizei im Ermittlungsverfahren fest und hatten insofern Bedeutung, als ein Nichtbeachten der Regeln u.U. zu einem Ausschluß des unter Mißachtung der Regeln erlangten Beweismittels führen konnte. 1986 trat nach langen Vorarbeiten der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PACE) in Kraft, der erstmals das Polizei- und Beweisrecht in Kriminalfällen gesetzlich regelt und Ermächtigungen für bestimmte polizeiliche Ermittlungsmaßnahmen enthält. Ergänzt wird dieses Gesetz durch sogenannte Codes of Practice, die in detaillierter Form weitere Erläuterungen und Regeln zur praktischen Ausgestaltung der im Gesetz gegebenen Befugnisse der Polizei enthalten.

S.54(3) PACE ermächtigt die Polizei, einen Tatverdächtigen nach dessen Festnahme zu durchsuchen und Gegenstände zu beschlagnahmen, die er mit sich führt. Kleidung oder die persönliche Habe des Verdächtigen dürfen jedoch nur durchsucht werden, wenn diese Gegenstände zur Flucht oder zu Angriffen auf sich selbst oder andere Personen oder Sachen benutzt werden können. Oder aber die Polizei muß vernünftigen Grund zu der Annahme haben, dass die zu beschlagnahmenden Gegenstände Beweismittel für die betreffenden Straftaten sein können.

Durchsuchungen des Verdächtigen nach ss.54 oder 55 PACE können in zweierlei Hinsicht im Zusammenhang mit einer DNA-Analyse relevant werden. Zum einen können dabei Material oder Körperspuren einer anderen Person, wie z.B. Blutspuren des Opfers, die sich an der Kleidung des Verdächtigen befinden, sichergestellt werden. Zum anderen kann bei einer solchen Durchsuchung DNA-haltiges Körpermaterial des Beschuldigten gefunden werden, anhang dessen eine Genanalyse vorgenommen werden kann, ohne dass eine Blutentnahme oder die Kenntnis des Verdächtigen notwendig sind.

Der eigentlich problematische Bereich der Polizeibefugnisse bei der DNA-Analyse ist die Entnahme von Blut- oder sonstigen Körperproben, die genügend DNA zur Durchführung eines Tests aufweisen. Vor einer Verhaftung ist die Polizei auf ein freiwilliges Mitwirken des Verdächtigen angewiesen. Erst nach einer Verhaftung und Ingewahrsamnahme geben ss. 62ff. PACE der Polizei die Befugnis, Proben des Verdächtigen zu nehmen. Hierbei wird unterschieden zwischen intimen (intimate samples) und nicht-intimen(non-intimate samples) Proben. Sowohl für intimate als auch für non-intimate samples gilt gemäß s.64 PACE, dass die Proben vernichtet werden müssen, sobald der Tatverdächtige von dem Tatverdacht freigesprochen wird oder aber eine Strafverfolgung nicht stattfindet. Falls eine körperlicher Eingriff beim Opfer zur Erstellung eines genetischen Fingerabdrucks notwendig ist, entweder um Spuren des Täters zu gewinnen oder aber um Vergleichsmaterial zu bekommen, muß es in ein solches Vorgehen auf jeden Fall einwilligen. Polizeiliche Befugnisse zur Entnahme von Körpermaterial am Opfer existieren weder für imtimate noch für non-intimate samples. Zwangsweise Entnahmen sind erst recht nicht möglich. Bei der Unterscheidung zwischen imtimate und non-intimate samples geht es in erster Linie und ausschließlich um den Intimbereich einer Person. Diese Abgrenzung wird nicht als befriedigend angesehen, so dass der Wunsch laut wird, die Abgrenzung nach der Eingriffsintensität vorzunehmen.